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9.8.27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 11(개포9단지) 공무원아파트 주택건설사업 /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13-5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## [심의 내용] 건축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 < 건축 분야 >

### □ 건축계획

- 옥탑층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은 발전량을 고려하여 2~3개로 나누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경관 측면에서 개선 바람.
- 지하층 벽체의 요철이 심하므로 흠막이 설계(굴토심의시 자료 제시)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### □ 방재

- 각 동별 소방차 정차 구간을 표기하고, 회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개선 바람.
- 방재실에 화재 등 재난대응매뉴얼 비치 바람.

## < 공통사항 >
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.
  - 가.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(주거), 우수그린1등급(비주거)
  - 나. 주거-신재생에너지설비공급율 : 4.08%(PV383kW, 연료전지 410kW)  
비주거-신재생에너지설비공급율 : 7.21%(연료전지 143kW)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

- 계속 -

2019.8.27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9.8.27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 11(개포9단지) 공무원아파트 주택건설사업 /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13-5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 〈 공통사항 〉(계속)			
3. 『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』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.			
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5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9.8.27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